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서 울 행 정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6994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1. 주식회사 [redacted]
	2. [redacted]일차[redacted] 유한회사
	3. [redacted]팔차[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15. 1. 23.
판 결 선 고	2015. 2. 13.

주 문

1. 원고 [redacted]일차[redacted] 유한회사 및 원고 [redacted]팔차[redacted] 유한회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신탁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피고들이 원고 주식회사 [redacted]신탁(이하 '원고 신탁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신탁회사는 부동산신탁업 또는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개정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이 시행된 날인 2014. 1. 1. 이전에 [redacted]씨 주식회사, [redacted]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담보신탁계약(위탁자가 자신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고, 신탁회사는 우선수익자인 채권자를 위하여 일정기간 신탁자산의 담보력이 유지되도록 관리하다가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하면 신탁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는 계약,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하고, 대상자산을 '이 사건 신탁자산'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자산을 수탁하였다.

나. 원고 [redacted]일차[redacted] 유한회사 및 원고 [redacted]팔차[redacted] 유한회사(이하 통틀어 '원고 유동화회사'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등을 유동화하거나 이를 추심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로 2009. 12. 28. 및 2010. 12. 30. 등에 걸쳐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한)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이를 보유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다. 피고들은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및 부칙 제1조 본문, 제17조 제1항(이하 위 부칙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칙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의 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2014. 7. 10. 및 같은 해 9. 10.에 걸쳐 별지 1 "과세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하여 각 재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개정법 제107조 제1항 제3호를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부칙규정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정의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와 같은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유동화회사가 제기한 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유동화회사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1267 판결,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유동화회사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 물론 원고 유동화회사가 이 사건 신탁자산에 관하여 우선수익권 등을 보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에 있어서 재산세 상당액 만큼의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제적, 사실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뿐 지방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 만일 원고 유동화회사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원고적격을 확장한다면, 과세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사람 또는 과세물건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보유한 사람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 따라서 원고 유동화회사가 신탁자산의 환가절차와 관련하여 우선수익권을 주장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 신탁회사에 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직접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 유동화회사는 행정소송법 제12조가 정한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유동화회사가 제기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5. 원고 신탁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지방세법의 개정내용

구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제5호는 '제1항에도 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구하고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를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정법은 제107조 제2항 제5호를 삭제하는 한편, 제107조 제1항 본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단서 제3호는 '다만,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 된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위 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경우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취지는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한편, 이 사건 부칙규정은 위 개정규정을 2014. 1. 1.부터 시행되도록 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과 같이 개정법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도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진정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지 여부

헌법 제13조 제2항은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새로운 입법으로 과거에 소급하여 과세하거나 또는 납세의무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중과세하도록 하는 것은 위 헌법조항에 위반된다고 하였다[1995. 3. 23.자 93헌바18 등(병합) 참조].

여기서 소급입법의 유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고, 전자는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99헌바55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칙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1. 1. 이전에 이미 재산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대해서 개정내용을 적용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개정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재산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므로, 2014. 6. 1.분 재산세)부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하려는 것일 뿐이므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에 작용하는 진정소급입법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신탁회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이 2014. 1. 1.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부과원인 사실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아니라 과세기준일 현재 자산을 보유하는 행위이고, 이는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4. 1. 1.에는 전혀 도래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이다. 물론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법적상태의 존속을 신뢰한 신탁회사의 신뢰보호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이를 곧바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박탈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규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 신탁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칙이 도출되는바(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바12 결정 등 참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위 99헌바55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법이 신탁재산에 관하여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종래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재산의 등기·등록명의인이 달리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수입의 기본이 되는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충실을 도모하는 지방세법의 기본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그 공익상 필요와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른 한편, 개정법으로 인하여 원고 신탁회사가 침해받는 신뢰이익은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재산세 납세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자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응 원고 신탁회사의 비용 등 회수권이 침해될 여지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으나 개정법 제110조, 제111조에 따른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시가표준액의 2%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에 불과하고, 수탁자는 납부한 재산세를 신탁사무 처리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신탁자산의 환가대금에서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법익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전에 형성된 신뢰이익의 손상정도와 개정법이 실현하고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하는 위와 같은 공익을 비교형량할 때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법질서와의 사이에 크든 작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하기 마련이라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며,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 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함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뢰의 손상은 헌법상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 신탁회사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개정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제3호 및 이 사건 부칙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며 거기에 원고 신탁회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원고 유동화회사가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 신탁회사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수

판사 김재령

판사 김태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1. 과세처분 내역

순번	처분청	부과년월일	피처분자	재산세액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629,670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116,280
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899,500
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477,270
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4,325,400
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3,950
7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02,780
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68,770
9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10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68,770
1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60,090
1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1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1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1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1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60,090
17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1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60,090
19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20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3,950
2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2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2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59,410
2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2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5,540,810
2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4,831,940
27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4,867,550
28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398,650
29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5,438,860
30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6,439,250
3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02,780
3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33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34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35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3,950
36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260,090
37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014-07-10	주식회사[redacted]	134,8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38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39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40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41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42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43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44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45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46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8,770
47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48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3,950
49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50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51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8,770
52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53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54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55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8,770
56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3,950
57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58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59	[redacted]	2014-07-10	[redacted]		260,090
60	[redacted]	2014-07-10	[redacted]		293,370
61	[redacted]	2014-07-10	[redacted]		358,510
62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3,950
63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64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65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66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3,950
67	[redacted]	2014-07-10	[redacted]		134,800
68	[redacted]	2014-09-10	[redacted]		629,670
69	[redacted]	2014-09-10	[redacted]		457,814,490

순번	처분청	부과년월일	피처분자	재산세액
1	[redacted]	2014-07-10	[redacted]	12,000
2	[redacted]	2014-09-10	[redacted]	208,324,56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2.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생략)
 나. 별도합산과세대상(생략)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시(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09-25

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부칙 <법률 제12153호, 2014.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7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다만,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 이 경우 수탁자(지역주택조합·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원)는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등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등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 헌법

제13조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